

'05. 12. 23(금)  
제245회 정례회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23.  
제245회 정례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12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분장사무 신설

- 건설교통국 :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한시기구 존속기한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2007년 6월 30일까지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 2008년 10월 30일까지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 1과 3담당에 정원은 15명이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계획 수립과 기반조성, 이전기관 사옥 및 공동주택 건설,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행·재정적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속한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희생자·유족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호적등

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령사업 등 일부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lt;신설&gt;</u>	제12조(건설교통국)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③ (생략)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생략)

**제7조 (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①사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